

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임무)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원 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원과 교회 학교교사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하며 교육원장을 실행위원회에 추천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각 노회 1인씩 총 26인(여성 1인 이상), 위원회 추천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년조를 나누어 공천한다.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소위)

본 위원회는 연구 및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개정 및 시행

제9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현의하여 개정한다.

10조(시행)

본 규정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목회신학대학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대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목회신학대학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교단의 선교와 교역자수급 정책에 의거하여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목회자 양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목회환경의 변화와 선교의 다양화에 따른 목회자 양성
2. 복음전도자로서 영성 계발과 목회 능력의 전문화
3. 지역의 특성화와 전국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

제4조(설치 학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목회신학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목회신학대학

제5조(설치장소)

제4조의 설치학교를 총회 교육원 내에 둔다.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제6조(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신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목회신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삭제하기로 하되 한시적으로 존속>을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9조(재정)

대학과 대학원(삭제하기로 하되 한시적으로 존속)(이하 “학교”라 한다)의 자산은 총회 지원금, 등록금, 수익사업, 후원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 교육사업
2. 수익사업회계 - 수익사업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 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감사)

총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총회 감사로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과 2항의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해 산

제16조(해산)

학교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학교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 교육원에 귀속된다.

제4장 교 직 원

제18조(학교의 장)

학교의 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교직원)

위원회는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대해서 따로 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개정 및 시행)

1. (최초 시행일) 이 정관은 제96회 총회 결의로 시행한다.
2. (학칙 및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